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46

발의연월일: 2025. 4. 8.

발 의 자: 허성무·이수진·김문수

최민희 • 문정복 • 윤준병

송재봉 • 전재수 • 이병진

박선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수립·총괄·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 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 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 로 한다.

1. 재정경제부

1의2. 기획예산부

제27조의 제목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경제·재정정책의수립·총괄·조정,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를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재정정책의수립·총괄·조정"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같은 조 제3항·제5항·제7항 및 제9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기획예산부) 기획예산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	·
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	•
조의2에 규정된 사무	기획예산부장관

-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기획예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아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또는 기획 재정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u> 이 겸임	<u>재정경제부장관</u>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 ② (생	제19조(부총리)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③ 부총리는 <u>기획재정부장관</u> 과	③ <u>재정경제부장관</u>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u>기획재정부장관</u> 은 경제정책	④ <u>재정경제부장관</u>
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	
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 조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u>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 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기획재정부

<신 설>

- 2. ~ 19. (생략)
-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 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 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 으로 한다. 다만, <u>기획재정부</u>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 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에 는 차관 2명을 둔다.
- ③ (생략)

<u>-</u>	재정경제부
장관	
제26조(행정각부) ① -	
<u>1. 재정경제부</u>	
1의2. 기획예산부	
	Ó)
2. ~ 19. (현행과 같	音)
②	
개정	l 겨 제 부
· <u>/ 1 C</u>	<u> </u>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u>(기획재정부)</u> ① <u>기획재정</u>	제27조(재정경제부) ① 재정경제
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	
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	
·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	
·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	
관세 •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	
리, 경제협력 • 국유재산 • 민간	
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② 재정경제부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	3
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	
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u>재정경제부장관</u>
국세청을 둔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	5
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	
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	<u>재정경제부장관</u>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	7
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	
	•

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장</u> 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 ⑧ (생 략)
-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
 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생략)

<신 설>

	<u>재정경제부</u>
장관	
⑧ (현행과 같음)	
9	
	<u>재정경제부</u>
<u> 장관</u>	

①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기획예산부) 기획예산 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예산・기금의 편성・ 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